

대만의 동쪽 23.5°N: 국제 5일 관광 영상 챌린지

저작권재산권 및 작품 이용허락 동의서

작성자 _____ (이하 “본인”이라 함)

본인은 교통부 관광서 화동중곡 국가풍경구관리처(이하 “주최기관”이라 한다)가 개최하는 “대만의 동쪽 23.5°N: 국제 관광 시간제한 영상 창작 공모전” (이하 “본 공모전”이라 함)에 참가함에 있어, 참가 작품의 독창성을 보장하고 이용허락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제 1조 참가 작품의 독창성 보증

1. 본인은 참가 영상(이하 “참가 작품”이라 함)이 모두 본인이 직접 창작한 작품이며, 제 3자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어떠한 자료도 표절, 모방, 각색 또는 복제하지 않았음을 보증한다.
2. 참가 작품에는 적법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대중음악, 영화음악, 영상, 사진, 미술저작물 또는 그 밖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소재를 사용할 수 없다. 참가 작품에 상기 소재가 사용된 경우, 본인은 직접 권리자로부터 적법한 이용허락을 취득하고, 작품 제출 시 주최기관에 이용허락 증빙서류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참가 작품의 적법성 및 향후 공개 이용의 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 2조 이용허락에 대한 동의

1. 본인은 참가 작품을 본 동의서에 서명한 날부터 영구적이고 비독점적으로 주최기관 및 주최기관이 지정하거나 이용을 허락한 제 3자(대행기관 및 홍보 협력 파트너를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가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용허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a. 비영리적 이용: 주최기관 및 주최기관이 지정하거나 이용을 허락한 제 3자는 비영리적 목적을 위하여 참가 작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용방법에는 공개상영, 공개방송, 공중송신, 복제, 편집, 각색, 배포, 전시 및 그 밖의 모든 저작권의 이용행위가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용 형태에는 주최기관이 직접 개최하는 영화제 행사, 상금이 없는 공모전, 관광 또는 교육 홍보, 언론 홍보, 작품의 소장 및 보존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b. 영리적 이용: 주최기관 및 주최기관이 지정하거나 이용을 허락한 제 3자가 참가 작품을 상금이 지급되는 다른 공모전 또는 상업적 영화제에 출품하거나 기타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에 앞서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허락 조건(이용허락료, 이용허락 기간, 이용허락 지역 등을 포함함)은 양 당사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2. 본인은 주최기관 및 주최기관이 지정하거나 이용을 허락한 제 3자가 전항의 이용허락 범위 내에서 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참가 작품에 필요한 편집, 수정, 재편집, 음악 삽입 또는 기타 각색 행위를 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가 작품에 표시된 본인의 성명을 생략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본인은 전항의 이용허락 범위 내에서 주최기관 및 주최기관이 이용을 허락한 제 3자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저작권법 제 16 조의 성명표시권 및 같은 법 제 17조의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 3 조 제 3 자 소재의 이용허락 보증

1. 참가 작품에 이미 공개적으로 발표된 문자 자료, 인터뷰, 영상 기록 또는 제 3자가 창작한 소재(소품, 음악, 사진 등)가 사용된 경우, 본인은 해당 제 3자로부터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서를 직접 취득하여야 하며, 해당 이용허락의 범위가 본 동의서에 따라 주최기관에 부여되는 이용 범위를 포함함을 보증한다.
2. 본인은 전항의 제 3자 이용허락 내용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증한다. 즉, 주최기관이 해당 소재를 소장·보존, 복제, 편집, 각색, 발행, 공개방송, 공중송신, 공개상영, 홍보, 인터넷 게시 및 기타 모든 저작재산권의 이용행위에 이용할 수 있고, 해당 제 3자가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며, 주최기관이 참가 작품에 대한 수정권을 보유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4 조 공동저작물의 처리

1. 참가 작품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완성한 저작물(공동저작물 또는 저작재산권이 공유된 저작물을 포함함)인 경우, 모든 공동저작자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 5 조 권리 보증 및 분쟁 처리

1. 본인은 참가 기간 및 이용허락 기간 동안 참가 작품의 저작재산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이 본인 또는 모든 공동저작자에게 적법하게 귀속되어 있으며, 해당 권리를 어떠한 제 3자에게도 양도하거나 독점적으로 이용허락하지 않았고, 중복 이용허락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주최기관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없음을 보증한다.
2. 참가 작품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이 모든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주최기관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주최기관은 또한 본 동의서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분쟁 내용에 대한 사전 조사 또는 확인을 거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제 6조 계약 위반에 대한 처리

1. 본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주최기관은 참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미 수상한 경우에는 이미 수여된 상장, 트로피, 상금 및 기타 수상 물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 a. 본 동의서 제 1조의 독창성 보증 규정을 위반한 경우
 - b. 본 동의서 제 3조의 제 3자 소재 이용허락 보증 규정을 위반한 경우
 - c. 본 동의서 제 5조의 권리 보증 규정을 위반한 경우
 - d. 제 3자의 신고 또는 고발에 따라 타인이 대신 제작한 행위,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본 공모전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주최기관의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경우
2. 본인에게 전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주최기관 또는 제 3자에게 손해(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손해배상금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가 발생한 경우, 본인은 모든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주최기관을 상대로 어떠한 주장 또는 청구도 할 수 없다.

제 7조 기타

1. 본 동의서의 해석 및 효력은 중화민국(대만) 법률을 준거법으로 한다.
2. 본 동의서의 일부 조항이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본 동의서는 본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며, 본인이 서명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주최기관의 서명 또는 기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양 당사자 간 본 동의서의 내용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로 한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는 대만 화롄지방법원을 제 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하기로 합의한다.

교통부 관광서 화동종국 국가풍경구관리처 귀중

작성자(서명 또는 날인): _____

주민등록번호/거류증번호/여권번호: _____

본적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서명일: 서기 _____ 년 ____ 월 ____ 일

대만의 동쪽 23.5°N: 국제 5일 관광 영상 챌린지

- 스토리보드 요약본(상세 스토리보드 표는 별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번호	장면 / 장소	화면 내용 개요	비고 (음악/인터뷰/항공 촬영 등)
00 (예시)	오프닝: 화롄 리위탄(花蓮鯉魚潭)	호숫가에서 산책하는 모습에서 시작해 천천히 전체 풍경으로 화면을 전환하며, 산과 리위탄의 경관으로 연결합니다.	
01			
